

【별표 4】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1조 제2항 관련)

구분 \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text{mg}/\text{m}^2\cdot\text{h}$ 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text{mg}/\text{m}\cdot\text{h}$ 로 한다.				